

등급분류 규정

2009년 2월 27일 제 정
2014년 4월 25일 개 정

제1장 총 칙

제1조 (설치근거) 대한장애인요트연맹 규정 제37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 위원회를 설치한다

제2조 (명칭) 본 위원회는 대한장애인요트연맹 등급분류위원회라 칭한다.

제2장 목적 및 사업

제3조 (목적) 본 위원회는 선수가 정신적 및 신체적인 면에서 건강한 상태로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며,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(IPC), 국제장애인요트연맹(IFDS), 대한장애인체육회(KOSAD)등과 스포츠의학에 관한 정보 교환과 학술교류를 통하여 스포츠의학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 (사업) 본 위원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,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본 협회의 자문에 응한다.

1.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(IPC), 국제장애인요트연맹(IFDS)의 의무위원회 및 국제스포츠기구 그리고 대한장애인체육 의무위원회와의 업무 협조
2. 국제올림픽위원회 승인 도핑연구소, 국내유관연구소와의 정보교환과 업무 협조
3. 국내 임원·선수에 대한 약물복용의 폐해·계몽 및 교육과 복용금지 약물 목록의 작성

4. 국제경기대회 파견선수 약물복용에 대한 예방교육과 도핑 검사 활동
5. 국내경기행사에서 도핑금지 규정과 벌칙규정 제정
6.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
7. 각종 대회 시 의무팀 운영과 관리
8. 기타 본 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3장 조 직

제6조 (구성) ① 본 위원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위원장 1인

부위원장 1인

위 원 10인 이내

② 위원장은 본 연맹 의무상임이사를 당연직으로 하며, 위원은 관련된 분야의 종사자로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.

제7조 (회의소집) 위원회의 회의는 회장이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
제8조 (의결 정족수)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행사한다.

부 칙

1.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장애인체육회 규정에 준한다.
2.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